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32호 2020. 3. 16.(월)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3

공 고

-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 4
-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5
-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 10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고시 제 2020-8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보리마당로 56	2020.3.16.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7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목포시 고시 제 2020-8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16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텃골로33번길 8	2020.03.16.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시 제 2020-000호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거소 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목포시장 인

사본의 종류	일반사본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고
선거인명부	A4 1매당 100원	USB(16GB기준)복사분량 →1개당 15,000원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목포시 공고 제 2020 - 400호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 정의(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안 제4조, 제5조)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4.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조례(안) : 붙임

6.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6. ~ 2020. 4. 6.(21일간)

7.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입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트윈스타행정타운 4층 자원순환과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원순환과(☎061-270-3656, FAX 27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따른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2.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기타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사업
8. 시장이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이월) 회계의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0-1호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목 포 시 장

1. 공고명 :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2. 공고기간 : 2020. 3. 16. ~ 2020. 4. 16. (30일간, 공휴일 포함)
3. 설치계획

가.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 생활폐기물 및 처리 후 잔재물, 압축포장 가연성폐기물
- 발생 및 처리대상 폐기물량 : 190톤/일 내외(365일 발생 기준)

나.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목포시 전역 및 신안군 8개 읍·면

다. 폐기물처리시설 종류 및 규모 : 소각시설 220톤/일 내외

※ 향후 설치계획 변동 가능, 변동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 이행 예정

4.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가. 입지선정 기준

- 1) 소각시설 설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지역
- 2) 주거지와 격리정도를 고려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 3)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한 지역
- 4)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
- 5) 토지이용계획(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 6)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 최소화를 통한 경제적인 건설과 자원순환 에너지 생산 활용이 용이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 7) 공개모집 입지후보지역을 우선 검토
- 8)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2018년)에서 도출된 지역 검토
- 9)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등

나. 입지선정 방법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2)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11명 이내)

- 목포시 의회 의원 : 2명
- 목포시 공무원 : 2명
- 목포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 3명
- 목포시장의 선정한 전문가 : 2명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명

5.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가. 기간 : 2020. 3. 16. ~ 2020. 4. 16. (30일간, 공휴일 포함)

나. 범위 : 목포시 전역

다. 응모자격

○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과반수의 주민동의와 신청지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매각 동의를 얻은 개인, 단체, 문중대표, 마을대표 등

※ 단, 신청지역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거나 신청지의 토지 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주민동의나 매각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라. 후보지 조건

○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등은 제외)

마. 신청서류

1)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 입지 응모신청서

2) 신청지역 주민동의서

(신청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3) 신청지 토지소유자 매각 동의서(신청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 신청서 접수장소 :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4층 자원순환과, ☎061-270-8585)

※ 접수기한 : 2020. 4. 16. (목) 18:00까지 방문 접수한 건에 한함

6.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각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공사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지원

- 1) 소득증대사업
- 2) 복리증진사업
- 3) 육영사업

7.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당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자원순환과(☎061-27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호 서식]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 응모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응모지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토지 소유자		
					주 소	성 명	
주민 동의	동	세대수	동의세대수	동의율(%)	비 고		
응모 사유							

위와 같이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후보지를 신청합니다.

- 붙임 1. 입지 응모 주민동의서
2. 입지 응모 토지소유자 매각동의서

2020. . .

신청인(대표자) :

(인)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2호 서식]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 응모 주민동의서

목포시 일원에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 신청을 동의하며,
최종 선정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연대하여 서명(날인)합니다.

연번	성명 (세대주)	주 소	생년월일	서명(인)

※ 필히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3호 서식]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 응모 토지소유자 매각동의서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아래의 토지를 매각할 것을 동의하며 매각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illegible]

※ 해당 필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